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자: 회장 백승현)

접수일자	2008.01.15	접수번호	450873
<p>청구정보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에서, 2007년 10월 4일, 미국 스위프트사 수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알려진 등뼈가 재차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광우병 위험 부위가 발견된 원인에 대한 미국측의 조사보고서 혹은 해명서 원본 2. 이러한 미국의 해명이 신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우리측 평가 대책 보고서 혹은 검토서 3. 제 1항의 등뼈 발견 이후,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위한 미국 내 선적을 금지한 같은 해 10월 5일부터 본 건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결정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에 이미 수출 선적되었던 것으로서 한국에 도착되어 한국에 검역을 신청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량과 검역 결과 4. 제 1항의 등뼈 재차 발견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제정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계속하고, 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조치인지에 대하여 검토 평가한 보고서 혹은 검토서 5.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검역에서 미국의 작업장 번호 960, 작업장 이름 Greater Omaha, 주소 Omaha, NE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미국측의 조사보고서 혹은 해명서 원본 6. 위 제 4항의 미국의 해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측 평가보고서 혹은 검토서 7. 미국의 소 광우병 위험요인 통제 정책의 내용 및 그 신뢰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혹은 검토 자료 		

<p>공 개 내 용</p>	<p>① 10.4일자 등뼈 검출에 대한 미측 조사보고서 혹은 해명서 : (공개) '07.10.5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검출된 건과 관련하여 당시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승인을 취소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중단과 미국으로부터 수출선적 중단 등 실질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보고서는 요구하지 않았음</p> <p>② ①의 보고서에 대한 우리측 평가 대책 보고서 혹은 검토서 : (공개) ① 답변 관련 평가대책 보고서 및 검토서는 없음</p> <p>③ '07.10.5일 이후 검역된 미국산 쇠고기 수량과 검역결과 : (공개) '07.10.5일 수입검역중단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10.5일 이후 검역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는 없음</p> <p>⑤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한 미국측의 조사보고서 혹은 해명서 : (공개) 다이옥신 검출 건과 관련하여 미측에서 제공한 문서 4건</p> <p>⑥ 다이옥신 관련 미국의 해명에 대한 우리측 평가보고서 혹은 검토서 : (공개) 기 공개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대책 보고('07.8.20)를 참고 하시기 바람</p>
<p>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p>	<p>④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계속한 것이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조치인지에 대하여 검토 평가한 보고서 : (비공개)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설문 및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 방역관리 실태 등을 조사·평가한 바 있음. 다만 동 자료는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함</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⑦ 미국의 소 광우병 위험요인 통제 정책의 내용 및 그 신뢰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혹은 검토 자료 : (비공개) 미국의 광우병 방역·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는 '05년 국내 전문가들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평가한 바 있으며, '07.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받은 후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있어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평가한 바 있음</p> <p>다만, 동 자료는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함</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사본 · 출력물		
	교부방법	모사전송		
공개일시 (기간)	2008.01.25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0원	0원	0원	0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년 01 월 25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부 장관</p>				

처 리 과 명	가축방역과	문 서 번 호	가축방역과-535호
담당자	이 름	홍기욱	
	직위/직급	수의주사	
주 소	(427-719) 경기 과천시 중앙동 농림부 가축방역과		
연 락 처	02-500-1941 (전송:)		
전자우편주소	hongko@maf.go.kr		